

제3차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상 탄소배출 측정 이슈」



주 제: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상 탄소배출 측정 이슈

일 시: 2023년 7월 13일(목) 14:00~16:00

발표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정석우 교수

장 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관 8층 중회의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2023년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를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로 정하고 관련 연구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차 세미나에서는 새롭게 제정되는 국제기준인 「IFRS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S1과 S2에 대해 살펴보았고, 2차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의 실무적용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3차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 보고의 실제 적용사례인 탄소회계와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기준과 지침을 살펴보고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정석우 교수를 연사로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¹⁾

가. 서론

2015년, UN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전 지구적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속가능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했다. 17가지 목표 중 기후 관련 목표는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으로 들 수 있다. 이후, 2018년 IPCC는 글로벌 온난화 대응을 위한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 퇴치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탄소 배출 관련 정보의 공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의 탄소배출의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 탄소²⁾회계³⁾

● 탄소회계 개념 종류

탄소회계 개념을 살펴보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재무정보, 탄소 배출량 측정 정보,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회계처리 등으로 설명된다. 탄소 배출량 측정 정보는 조직(기관)이 생산한 온실가스와 생산을 회피하였거나 제거한 온실가스 양을 지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추적하고 보고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보유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의 가치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회계처리를 의미하며, 관련 회계기준으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와 2004년에 발표한 국제 회계기준 해설위원회(IFRIC) 3 “Emission Rights” 등을 들 수 있다.

- 1)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세계자원연구소(WRI)·FKI 전국경제인연합회·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기준』, https://ghgprotocol.org/sites/default/files/2022-12/corporate-standard-revised_korean.pdf, 검색일자: 2023. 9. 21.
- 2) 탄소(CO₂)는 생산 활동에 배출되는 가장 일반적인 온실가스(GHG)로서 온실가스의 약칭으로 탄소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좀 더 정확한 용어로는 이산화탄소 등가물의 의미로서 CO₂_e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온실가스들의 지수를 적용하여 탄소의 배출로 변환하여 총량을 계산함
- 3) 탄소회계(Carbon accounting)는 일반적으로는 일련의 경제 내 기업이나 조직의 활동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정량화 및 계량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를 회계적으로 표현하면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그 영향을 경영활동의 주요지표인 재무제표에 정량적, 계량적 형태의 지표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탄소회계 및 보고 기준

탄소배출 관련 보고 기준에는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s, CDP)와 탄소배출 측정을 위한 회계 기준 및 탄소 정보 공시 기준들이 있다. 먼저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는 2002년부터 기업에 탄소 관련 정보 공시를 요구했으며, 측정을 위한 회계기준에는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프로토콜(2001년)과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2015년) 등이 있다. 탄소 정보 공시를 규정한 기준으로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ASB),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TF(TCFD) 정보공시 세부지침, IFRS S2,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및 SEC 기후 관련 정보 공시 기준 등을 들 수 있다.

-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는 투자자, 기업, 도시, 주 및 지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글로벌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제비영리단체이다. 2002년에 48개 기업에 정보 공시를 요구했으며, 2015년에는 창립 파트너로 과학기반 이니셔티브(SBTi)를 설립했다. 그 이후, 2021년에는 2만 3천개 이상의 기업이 환경 데이터를 제출했다.

-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BTi)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는 탄소 공개 프로젝트(CDP), UN 글로벌 컴팩트(UNGC), 세계 자원 연구소, 세계자연기금(WWF)의 연합체이며, 주요 역할은 기업들의 1.5°C 절감 프로젝트에 맞춰, 탄소 중립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도록 독려하는 비즈니스 기후 행동 캠페인을 주도하는 것이다.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절감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

-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1998년,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공동으로 온실가스 프로토콜을 설립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국제표준으로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 기준을 제공⁴⁾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관한 기준을 개발하고 확산한다는 목표하에 1998

4) GREENHOUSE GAS PROTOCOL, <https://ghgprotocol.org/about-us.>, 검색일자: 2023. 9. 27.

년, 온실가스 프로토콜 이니셔티브(GHG Protocol Initiative)를 발족했다. 2016년,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에 데이터를 제출하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프로토콜을 활용한다.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준

기준	개요	대상
Corporate standard(2001, 2004)	기업 수준 온실가스 인벤토리 ⁵⁾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기업 및 기관
GHG Protocol for Cities(2014)	도시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회계처리 및 보고 체계	도시 및 공동체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Standard(2011)	전체 가치사슬의 배출 영향 평가 및 감축 활동 식별 기준	기업 및 기관
Policy and Action Standard(2014)	정책 및 활동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접근법	국가 및 도시
Product Standard(2011)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배출량 식별을 위한 회계 및 보고 기준	기업 및 조직
Project Standard(2005, 2011)	기후변화 감축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편익 계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정책 중립적 회계기준	기업 및 조직, 국가 및 도시

출처: 정석우,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상 탄소배출 측정 이슈[발표자료]」, 2023. 7. 13.

온실가스 프로토콜 이니셔티브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기준과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 감축량 산정 기준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배출원 목록별로 자료를 구축한 것을 말함

다.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기준(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⁶⁾

● 개념

사업자 수준의 기준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계량화하고 보고하기 위한 단계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원칙(기준, 지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는 목적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및 정확성의 다섯 가지 원칙에 기반한다. 원칙별 상세 내용은 다음의 표에서 설명한다.

표 2 1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원칙

원칙	내용
목적적합성	-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사업 내·외부의 인벤토리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완전성	- 선택된 인벤토리 범위 내에서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과 그 활동에서의 배출량을 산정·보고해야 하며, 제외된 배출원 및 활동사항은 공개하여 제외사유를 설명해야 함
일관성	- 시간 경과에 따른 배출량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일관된 조사 분석방법 사용 - 데이터, 인벤토리의 범위, 연구방법, 그리고 그 밖의 관련요소들의 변화를 시간경과에 따라 명확히 기록해야 함
투명성	- 명확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모든 관련 이슈들을 객관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야 하며, 모든 관련 가정을 공개하고 사용된 산정방법과 정보원을 명시해야 함
정확성	- 판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수치가 실제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함 - 보고된 정보의 타당성에 대해 사용자가 이성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확성을 보장해야 함

출처: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세계자원연구소(WRI)·FKI 전국제연연합회·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기준』, 2004, p. 7.

6)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 2장, 사업 목표와 인벤토리 설계(지침)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 달성되는 다섯 가지 사업 목표는 ① 온실가스 리스크 관리 및 감축 기회 규명 ② 공개보고 및 자발적 온실가스 프로그램 참여 ③ 의무적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 참여 ④ 온실가스 시장 진출 및 ⑤ 자발적 조기행동의 향후 인정이다. 목표별 상세 내용은 다음의 표에서 설명한다.

표 3 2장 사업 목표와 인벤토리 설계

원칙	내용
온실가스 리스크 관리 및 감축기회 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수반될 리스크 규명 - 비용 효율적인 감축 기회 규명 - 온실가스 목표 설정, 경과 측정 및 보고
공개보고 및 자발적 온실가스 프로그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설정 경과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보고 - 온실가스 등록 체계 등 정부 및 NGO 보고 프로그램 참여 - 환경마크와 온실가스 인증서
의무적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역, 지방 차원의 정부보고 프로그램 참여
온실가스 시장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온실가스 거래 프로그램 지원 - 외부의 배출 상한, 거래할인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 참여 - 탄소세 및 온실가스세 산정
자발적 조기행동의 향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참여로 인한 기준선(Baseline) 배출량 및 크레딧(Credit) 지원 정보 제공

출처: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세계자원연구소(WRI)·FKI 전국제연연합회·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기준』, 2004, p. 11.



● 3장, 법인형태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기준, 지침)

사업자 보고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통합하는 데 출자비율 기준(Equity Share Approach)과 통제력 기준(Control Approach)의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보고사업자가 대상 사업을 완전히 소유할 경우 조직범위는 어느 기준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부분소유(즉 공동 출자)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어느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직범위 및 보고대상 배출량이 달라진다.

먼저 출자비율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상사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 사업에 대한 출자비율(소유권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출자비율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에서 생기는 리스크와 이익에 대하여 갖는 경제적권리를 의미한다. 출자비율이 소유비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출자비율이 경제적 권리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와 사업과의 관계인 경제적실체가 법적 소유형태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러한 원칙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도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통제력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통제력을 지닌 사업에서의 온실가스배출량만을 100% 산정한다. 지분(출자비율)을 갖지만 통제력을 갖지 않는 사업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산정하지 않는다. 이를 사용할 경우, 경영통제력(operation control)과 재무통제력(financial control)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

재무통제력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활동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사업의 재무방침 및 경영방침을 지시하는 힘을 갖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에 대해 재무통제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 또는 자회사가 자신의 경영방침을 어떤 사업에 도입하여 실시할 완전한 권한을 갖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에 대하여 경영통제력을 갖는다고 정의할 수 있다.

● 4장,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기준, 지침)

소유권 및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직적 범위를 설정한 후, 사업자는 사업의 활동 범위를 결정한다. 이 작업에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여,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분류하고, 보고범위를 선정하여 직·간접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원천으로부터의 배출을 의미하고,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은 기업의 활동의 결과로 인한 배출이나, 다른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원천에서 발생한다. 무엇이 직간접적인지에 대한 분류는 조직적 영역 설정으로 선택된 통합 접근법(지분 공유 혹은 통제)에 의존한다.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목적상, 직·간접 배출 원천을 규명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다양한 조직형태와 다양한 종류의 기후 정책 및 사업 목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세 가지 범위(Scope1, 2, 3)가 설정되었다.

표 4 온실가스 배출 범위(Scope) 개념

원칙	내용
Scope 1 (직접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의미 * 전기, 열 또는 증기를 생산하기 위해 보일러, 터빈 등 고정배출원의 연료연소로 발생 * 물리적, 화학적 공정에서 재료의 제조 및 처리 시 직접 발생 * 자재, 제품, 폐기물, 직접 운송 등으로 인한 배출 * 비산배출(Fugitive Emissions): 고의, 비고의적 누출 * 자가발전전력과 시멘트생산 및 철강생산으로 인한 배출은 Scope 1에 해당
Scope 2 (간접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구입한 전력을 소비할 때의 배출량을 의미하며, 청정전력이나 재생 전력을 구매함으로써 배출량 저감 가능 * 전력생산공기업이 독립된 발전소의 전력을 구매하고 송배전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송배전 시스템에서 소모되는 배출량
Scope 3 (기타 간접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온실가스 간접 배출을 의미하며, 최종 소비자에 도달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함

출처: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세계자원연구소(WRI)·FKI 전국제연연합회·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기준』, 2004, pp. 27~29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단, Scope 3의 정의가 쉽지 않으므로 구분을 위해 확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자의 가치사슬을 확인
- 2) Scope 3 분류로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
- 3) 가치사슬에 입각한 사업 파트너를 식별
- 4) Scope 3의 배출량을 정량화

● 5장, 법인형태 및 배출원 변화에 따른 기준연도 및 배출량 재산정 방법(기준, 지침)

일관성 있고 유용한 시간경과별 배출량 비교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현재의 배출량과 과거 배출량을 비교할 수 있는 성과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 데이터는 기준연도의 배출을 근거로 해야 한다. 또한 시간별 배출의 일관성 있는 추적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인수, 합병, 분할 등과 같은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을 시 기준연도의 배출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배출량 추적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준연도 설정이다. 기준연도 설정 시 사업자는 검증 가능한 배출량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준연도를 선정해서 보고해야 하며, 그 특정연도의 선택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배출량을 재산정하고자 할 때는 유의한계(Significance Threshold)를 명시해야 한다. 유의한계는 데이터, 인벤토리 범위, 방법론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의 중요한 변화를 규명하는 데 사용되는 질적/양적 기준이다. 재산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의 기준연도 배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보고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 : 합병, 인수, 분할
 - : 배출활동의 아웃소싱과 인소싱
- 2) 기준연도 배출량 데이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경우
 - : 산정방식의 변화
 - : 배출계수 및 활동데이터의 정확성 향상 등
- 3) 중요한 오류 및 다수의 누적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 6장, 온실가스 배출원 규명 및 배출량 산정(지침)

인벤토리 범위가 설정되면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5단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 1) 온실가스 배출원 규명
-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선정
- 3) 사업활동 데이터 수집 및 배출계수 선택
- 4) 산정툴(tool) 적용
- 5) 사업자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집계

● 7장, 인벤토리 품질 관리(지침)

사업자는 인벤토리 향상, 이해관계자 요구, 규제대응 등 다양한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의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배출량의 산정보고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준수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벤토리 품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인벤토리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은 실질적인 프로그램 체제를 수립하는 기술적 측면을 수반한다. 또한 사업활동의 범위, 배출계수, 과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인벤토리 작성에 사용되는 방법, 데이터 과정, 시스템 및 측정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투명한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 인벤토리 품질관리 시스템의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한다.

- 1) 인벤토리 품질관리팀 구성
- 2) 품질관리 계획수립
- 3) 포괄적 품질점검 수행
- 4) 특정 배출원 카테고리의 품질점검 수행
- 5) 최종 인벤토리 측정과 보고검토
- 6) 공식 피드백 회로
- 7) 보고, 문서화, 기록보관 절차의 수립

● 8장, 온실가스 감축 회계처리(지침)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자발적 보고, 외부의 요구,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정부의 제도 변화는 시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서 발생한 오프셋(상쇄)과 크레딧(감축실적) 산정 역시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감소) 추적 시 제공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인수 및 부분매각, 폐점
- 2) 실제 저감량(효율성 증대 및 연료 대체)
- 3) 생산단계의 변화
- 4) 추정방법론 변화 등

온실가스의 오프셋(상쇄)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별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의미하고, 그 예로는 Alcoa가 재생 가능 에너지 인증서(RECs)를 구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부를 상쇄한 사례가 있다. 크레딧(감축실적)은 통상적으로 배출저감사업 등의 활동에서 발생되며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도 전환 가능한 유동적인 수단을 의미한다. 그 사례로는 교토의 정서 청정개발체제(CDM)에 의해 발급되는 인증배출감축량(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을 들 수 있다.

● 9장, 온실가스 배출 보고(기준, 지침)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공개 보고는 다음과 같은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필수정보는 사업자와 인벤토리 범위에 대한 설명과 배출량 정보를 의미한다. 사업자와 인벤토리 범위에 대한 설명에는 통합접근법을 포함한 조직범위, 사업활동 범위와 보고 기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배출량 정보는 각 범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기준 연도, M&A 등 조직범위의 중요한 변경, 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 틀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선택정보에는 배출과 성과에 대한 정보 및 오프셋 정보가 포함된다.

● 10장, 온실가스 배출 검증(지침)

검증은 보고된 온실가스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다. 사업자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은 초기단계이나, EU ETS 체제에서 온실가스 검증자는 국가기관이 인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검증자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 1) GHG 수행 경험 및 역량 검증
- 2) 산정방법론을 포함한 온실가스 이슈에 대한 이해
- 3) 사업활동과 산업에 대한 이해
- 4)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온실가스 배출 검증의 사례로는 PwC의 2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들 수 있다. 먼저 1단계로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방법인 배출량 산정 기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고, 2단계로 중대한 불일치를 규명한다.

● 11장, 온실가스 목표 설정(지침)

이 장은 기업이 어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감축 목표 설정단계, 결정사항, 결정의 적용 및 이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궁극적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이 목표의 설정은 인벤토리 구축의 필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온실가스 목표 설정 이유

- 1) 온실가스 리스크 최소화 및 관리
- 2) 비용 절감 및 혁신 촉진
- 3) 향후 규제 대비
- 4) 리더십과 기업의 책임 입증
- 5)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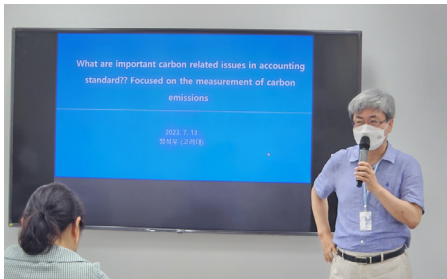
■ 온실가스 목표 설정의 단계

- 1) 고위 경영진의 의지 확보
- 2) 목표 유형 선택
- 3) 목표 범위 선택
- 4) 목표 기준연도 선택
- 5) 목표 완료기한 설정
- 6) 목표 공약기간 설정
- 7) 오프셋과 크레딧의 사용 여부 결정
- 8) 목표 중복산정 정책 수립
- 9) 목표 수준 결정
- 10) 진행 상황 추적 및 보고

라. 향후 과제

향후 기업의 탄소 배출 측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한 공시 기준하에서 탄소 관련 정보 공시 방법론 정립 필요
- 탄소 정보 측정에 GHG 프로토콜 기준 및 지침은 불충분하므로 자발 및 강제 지침 등의 구체적인 회계 기준 도입 필요
- 기업에 탄소시장의 탄소 관련 제도화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보다 상세한 제도 구상 필요
- 환경보호 목적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목적 등 탄소 배출 정보 활용의 목적 식별 및 조화 방안 마련
- 기업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탄소 절감 방안 확인
- 회계 분야의 탄소 배출 정보 공시에 대한 관심 및 노력 필요



2023년 제3회 원내 초청 세미나(2023. 7. 13., 본원 8층 중회의실)